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57

제출년월일 : 2019. 10. 25.

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법령 제·개정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무가 이양되거나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규가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

- 하천과(안 별표2)
 - 『하천법』 개정(2016.07.20.)으로 국가하천 안에서의 일부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 이양됨에 따라 기존에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했던 사무를 위임사무로 변경 신설함.
 - 국가하천 안에서의 일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 택시물류과(안 별표2)
 - 『궤도운송법』 개정(2009.04.22.)으로 궤도운송사업에 관한 일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 ·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휴지 또는 폐지,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안전관리, 시설개선 명령, 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산업과(안 별표3)
 - 기 위임된 건설기계 등록업무와 함께 건설기계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건설기계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위임규정을 신설함.
 -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증 발급,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등

- 건축주택과(안 별표2)
 - 『주택법』개정(2018.03.13.)으로 공사감리비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무를 공사장 관리감독 기관인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 공사감리비 예치

나. 위임사무 삭제

- 산단진흥과(안 별표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2006.04.01.)으로 (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련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기존 북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삭제함.
 - 검단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
- 농산유통과(안 별표2)
 - 『약사법』(2011.06.07.)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개정(2013. 01.04.)으로 동물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등 권한이 시도사무에서 구군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
- 일자리노동정책과(안 별표2)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2006.12.29.)으로 지역고용심의회에 구군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2006.12.30.)으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등 시도사무 일부가 구군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이 폐지 (2012.06.05.)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 지방고용심의회 지역별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노동조합에 관한 설립신고의 수리 등, 산업체 근무 근로청소년의 취학 권장 규정
- 물에너지산업과(안 별표2)
 -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2014.12.30.)으로 '계량기에 관한 개선명령'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보건건강과(안 별표2·별표4)

<근거법령 삭제>

- 『전염병예방법』(2009.12.29.), 『약사법 시행규칙』(2013.0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5.05.18.) 개정으로 관련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 제3군전염병예방 진료비의 징수, 마약의 도·소매보고, 조제실제제에 관한 면허증 등의 재발급, 마약류 도·소매업자 등에 대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구·군 등 사무이양>

- 『약사법』개정(2011.06.07.), 『의료법』개정(2012.02.01.)으로 관련사무가 시도사무에서 구군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의 수리 등, 한약업사에 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등,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에 관한 등록 등,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등

○ 청소년과(안 별표2)

- 『청소년기본법』개정(2004. 2. 9.)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정(2004. 2. 9.)으로 관련사무가 시도사무에서 구군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청소년 수런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허가 등
- 환경정책과(안 별표2, 안 별표4)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2015.12.22.)으로 관련사무가 시도사무에서 구군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 공원녹지과(안 별표2, 안 별표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11.29.) 개정으로 시도사무에서 국가사무(산림청)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자연공원법』(2008.12.31.) 개정으로 공원보호구역제도가 폐지되어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등, 자연공원에 관한 권한 중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관리

- 도시계획정책관(안 별표2)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정(2003. 10. 10.)으로 구군에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협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 계획의 입안 등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건설산업과(안 별표2)
 - 도로법 개정(2010.03.22.)으로 시도사무에서 국가사무(지방국토관리청)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 토지정보과(안 별표4)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5.06.04.)에 따라 관련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지적관리를 위한 도면의 재작성 승인

다. 근거법규 및 자구수정

- 제명수정(안 별표2, 안 별표4)
 - 위임사무 근거법규의 제·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법규 제명 수정
 - 경제정책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및 융자업체 실태 조사』사무 등 8개 부서 13건
- 근거법령 등 수정(안 별표2, 안 별표3, 안 별표4)
 - 위임사무 근거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법규 수정
 - 민생경제과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사무 등 14개 부서 72건
- 자구수정(안 별표2, 안 별표3, 안 별표4)
 - 위임사무 근거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위임사무 명칭 등 자구수정
 - 물에너지산업과『계량기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사무 등

11개부서 32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30. ~ 10.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부터 별표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경제정책관 | 1 | 삭제 <2009.6.10.> | 1. | 1.1. |
| <개정 2018.10.30.> | 2 | 삭제 <2008.12.30.> | | |
| | 3 | 삭제 <2008.12.30.> | | |
| | 4 | 삭제 <2008.12.30.> | | |
| | 5 | 삭제 <2008.12.30.> | | |
| | 6 | 삭제 <2008.12.30.> | | |
| | 7 | 삭제 <2008.12.30.> | | |
| | 8 | 삭제 <2008.12.30.> | | |
| | 9 | 삭제 <2018.10.30.> | | |
| | 10 | 2.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및 융자업체 실태조사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 례」제7조·제14조·제16조 | 2.1. |
| 민생경제과 <신설 2018.10.30.> | 1 |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등록갱신 다. 등록증의 반납 등 라. 변경등록 마.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바.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사.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 에 대한 검사요청 아.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 자. 영업정지 차. 대부업자의 등록 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카. 등록취소를 위한 의견청취 및 다른 시· 도지사등에게 지체없이 통보 타. 등록수수료 | 법 시행령 제7조 <u>같은 법 제12조제7항</u>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 |
| 일자리 노동정책과 | 1 | <u>삭제</u> | | |
| 그 6 8 식사 | 2 | <u>삭제</u> | | |
| | 3 | 삭제 | | |
| 산단진흥과 <개정 2018.10.30.> | 1 | 삭제 | | |
| V 8 2010.10.30. | 2 | 삭제 <2009. 6. 10 조례 제4051호> | | |
| 농산유통과 | 1 | 공동방제비용 부담 | 「식물방역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3. | 2 | 종축의 대여 및 교환 | 「축산법」제10조 | |
| | 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 「축산법」제12조 | |
| 4. | 4 | 삭제 | | |
| 기계로봇과, 물에너지산업과 <개정 2016.12.30., 2018.10.30.> | 1 |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다만,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한한다) | 「전기사업법」제71조 | |
| | 2 | 삭제 <2016.12.30.> | | |
| | 3 | 삭제 <2016.7.11.> | | |
| | 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파기·수거·판매중지의 명령, 파기·수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나. 보고명령 및 검사·질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u>제40조</u> 같은 법 제 <u>41조</u> | |
| | | 다.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1조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5 | 삭제 <2009.6.10.> | | |
| | 6 | 삭제 <2009.6.10.> | | |
| | 7 | 삭제 <2009.6.10.> | | |
| | 8 | 삭제 <2009.6.10.> | | |
| | 9 | 삭제 <2009.6.10.> | | |
| | 10 | 삭제 <2009.6.10.> | | |
| | 11 | 삭제 <2009.6.10.> | | |
| | 12 |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및 검사의 면제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수리 라. 시공업 등록말소 및 정지 마. 에너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바. 과태료 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 자・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 | |
| | 14 |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나.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다. <u>계량기사업자의 대장정리</u> 라. <u>등록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u> 마. 수리 및 자체 수리자 인정사무 바. 청문 |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제66조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15 | 계량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 기재 서류 접수 | 「계량에 관한 법률」 <u>제6</u> <u>조</u> | |
| | | 나. <u>정량표시 명령 및 정정</u> 다. <u>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무</u> 라. 정기검사의 증인 마. 보고 및 <u>조사 등</u> | 같은 법 <u>제42조</u> 같은 법 <u>제30조 및 제31조</u> 같은 법 <u>제29조</u> 같은 법 <u>제49조 및 제50조</u> | |
| | | 바. <u>삭제</u>사. 부정계량기의 처리아.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u>제52조</u> 같은 법 <u>제76조</u> | |
| | 16 | 삭제 <2015.5.20.> | | |
| | 17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 사실의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이행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 |
| 보건건강과 | 1 | 삭제 <2009.12.21.> | | |
| | 2 | <u>삭제</u> | | |
| | 3 | 삭제 <2009.12.21.> | | |
| | 4 |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u>결핵환자 등</u> 의 의료 | 「결핵예방법」 <u>제18조</u> 제1항・제 2항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5 | 마약류 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류 | | |
| | |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 | |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 | |
| | | | 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 |
| | | | 조 <u>제3항</u> ・제12조 | |
| | |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 |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 |
| | | |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1 | |
| | | | 조·제12조 | |
| | | 다.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7조 | |
| | |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 |
| | | 신고 수리 | 시행규칙 제16조 | |
| | |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 같은 법 제8조제3항·제5항 | |
| | | 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수리 | | |
| | |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
| | |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 |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 승인 | 같은 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 |
| | | 자. <u>삭제</u> | | |
| | |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 | 같은 법 제33조제2항 | |
| | | 카. 허가 등의 제한 | 같은 법 제37조 | |
| | | 타.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 법 제41조 | |
| | | 파.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42조 | |
| | | 하. 업무보고 등 | 같은 법 제43조 | |
| | |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 같은 법 제44조 | |
| | | 너. 청문 | 같은 법 제45조 | |
| | | 더. 과징금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46조 | |
| | | 러.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 같은 법 제50조 | |
| | C | 모스마아르이 원병 | [미야단피크M코정버르 레스크 | |
| | 6 | 몰수마약류의 처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3조,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
| | | | 在亡 百 시생 즉 시HD도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7 |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가. 개설허가 | 「의료법」제33조제4항, 같은 | |
| | | | 법 시행규칙 제 <u>27조</u> | |
| | | 나. 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 |
| | | 허가 | 시행규칙 제28조 | |
| | | 다. 삭제 <2011.3.10.> | | |
| | | 라. 삭제 <2011.3.10.> | 기 () 보기 기(TO > 기(4 주) | |
| | | 마. 지도와 명령 바. 삭제 <2011.3.10.> | 같은 법 제59조제1항 | |
| | | 마. 역세 <2011.5.10.> 사. 경비보조 등 | 같은 법 제83조 | |
| | | 아. 삭제 <2011.3.10.> | | |
| | 8 | 조제실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약사 법 제4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한함) 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의 제조 신고 수리 | 「약사법」제41조제1항 | |
| | | 나.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 |
| | | | <u> </u> | |
| | | 다. <u>삭제</u> | | |
| | 9 | 의약품 등의 검사명령 | 「약사법」제73조 | |
| | 10 | <u>삭제</u> | | |
| | 11 | <u>삭제</u> | | |
| | 12 | 삭제 <2009.12.21.> | | |
| | 13 | 삭제 <2009.12.21.> | | |
| | 14 | 삭제 <2009.12.21.> | | |
| | 15 | <u>삭제</u> | | |
| | 16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가.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6항 | |
| | | 나.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같은 법 제24조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회계과 | 1 | 은닉 시유재산 신고서 접수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 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
| | 2 | 시유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가.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8 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 행령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 |
| | | 나. 일반재산 매수신청서 접수 | 같은 법 제36조 | |
| | | 다. 일반재산 실태조사 및 공부정리 |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 령 제49조 | |
| | | 라. 일반재산의 지적·지목 변경 및 공부 정리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5조·제66조 | |
| | | 마. 일반재산의 변상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 령 제81조 | |
| | 3 | 삭제 <2008.7.7.> | | |
| 문화예술정책과 | 1 | 문화재 수리 공사 시행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 5호다목 | |
|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 | 1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 조·제10조 | |
| | 2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신청접수 및 서비스 지원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4조제1항 및 제5조 | |
| | 3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나.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6항 같은 법 제24조 | |
| 어르신복지과 | 1 | 삭제 <2011.12.30.> | | |
| | 2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나.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6항 같은 법 제24조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여성가족정책과, | 1 | <u>삭제</u> | | |
| 청소년과, <개정 2018.10.30.> 출산보육과 | 2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 임면보고 <u>의</u> 접수 나.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자사업법」제18조제6항 같은 법 제24조 | |
| 환경정책과 | 1 | 삭제 <2018.10.30.> | | |
| | 2 | 삭제 <2014.6.30.> | | |
| | 3 | 소음·진동 <u>관리</u> 와 관련한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개정 2018.10.30.> | 「소음・진동 <u>관리</u> 법」제46조 <개정 2018.10.30.> | |
| | 4 | 「자연환경보전법」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 | |
| | 5 |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u>삭제</u> | | |
| | |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 「 <u>실내공기질관리법</u>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 |
| | 6 | 삭제 <2018.10.30.> | | |
| | 7 |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제1항 | |
| | 8 | 삭제 <2018.10.30.> | | |
| 기후대기과 <신설 2018.10.30.> | 1 | 연료제조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료의 공급·판매·사용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 제4항 같은 법 제42조 | |
| | 2 | 대기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3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 신고 수리라. 조치기간 연장 승인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4조제7항・ 제45조제5항 같은 법 제4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45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제3항 | |
| | |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등, 허가의 의제 처리 다.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라. 측정기기의 부착, 운영·관리기준 준수 및 미준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등 마. 조치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측정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 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사. 조업정지 등의 조치명령 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등 자. 허가의 취소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23조·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제1항ㆍ 제4항ㆍ제5항 같은 법 제32조제6항ㆍ 제9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4 같은 법 제35조의3,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 |
| 자원순환과 | 1 |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가. 허가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다. 과징금 부과·징수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마. 허가시 관련 행정기관 협의바. 권리·의무의 승계 등사.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아. 조업 중단시 폐기물의 처리명령 및 조치자. 청문 | 「페기물관리법」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제4항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61조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2 |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보관창고 및 보관 기간 예외규정 승인 |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 3 |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 「페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 4 | 폐기물인계서의 접수처리 | 「폐기물관리법」제18조 | |
| | 5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 보관장소 승인 |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 | 6 |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및 인수받은 폐기물의 처리기한 연장 승인 | 「폐기물관리법」제25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
| | 7 |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휴업 ·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농지, 저지대, 연약 지반 등에 재활용할 때 재활용 승인 라. 재활용 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 수거량 조사 · 공표 | 「페기물관리법」제4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 |
| | 8 | 폐기물처리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페기물관리법」제68조 | |
| | 9 |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다음의 권한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등나.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등 승인다. 건설폐기물 재위탁 승인라. 과징금 처분 등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사용중지·폐쇄명령 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22조·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 령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8조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 아.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차. 휴・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보고・검사 등 카.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및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하. 청문 | 같은 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34조 제1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45조ㆍ제46조 같은 법 제57조제2항 | |
| 수질개선과 <개정 2018.10.30.> | 1 | 환경관리인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 | 「 <u>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u> 」 제96조 | |
| | 2 | 낙동강수계 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등 나. <u>오염총량초과 과징금</u> 부과·징수 등 다. 과징금 처분 라.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과 그밖의 수질 오염사고방지시설의 설치·개선명령 등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징수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 원등에관한법률」제12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 령 제14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4항 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6조 | |
| | 3 | 삭제 <2015.12.30.> | | |
| | 4 | 삭제 <2015.12.30.> | | |
| | 5 | 삭제 <2015.12.30.> | | |
| | 6 | 삭제 <2016.4.11.> | | |
| 공원녹지과 | 1 | 삭제 | | |
| | 2 | 삭제 <2008.7.7.> |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3 |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 |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 13조 | |
| | | 나. 지정해제 다. 지정·지정해제의 고시·통지·이의 신청 처리 등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8조 | |
| | | 라. 행위허가 마. 관리 등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 |
| | 4 | 시험림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47조 | |
| | 5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및 조치명령 | 「산림보호법」제24조 | |
| | 6 | 삭제 <2008.7.7.> | | |
| | 7 |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방사업의 시행 나. 공무원의 조사 등 다. 손실보상 라. 보상금의 결정 마. 보상금의 재결 신청 바. 삭제 <2011.3.10.> 사. 사방시설의 관리 아. 수익의 귀속 자. 삭제 <2011.3.10.> 차. 원인자 부담 카. 사업의 위탁 타. 공부의 비치 | 「사방사업법」제5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 8 | 공원·녹지·유원지·임야 등 공원녹지 분야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나. 행정재산 권리보전, 대장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다. 행정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변상금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20조·제25조 같은 법 제44조·제47조 같은 법 제81조·제83조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도시계획 | 1 | <u>삭제</u> | | |
| 정 책 관 <개정 2018.10.30.> | 2 | <u>삭제</u> | | |
| | 3 | 삭제 <2009.6.10.> | | |
| 도시계획 정책관, 건축주택과 <개정 2018.10.30.> | 1 | 주택임대사업 <u>및 관리에 관한</u> 다음의 권한 <u>가. 공익사업의 지정</u> <u>나. 임대주택관리</u>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 | |
| | 2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및 사업착수신고 등(다만, 区지역내 30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취소는 제외한다) | 령 <u>제41조</u> 「주택법」 <u>제15조</u> | |
| | 3 |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교체·지 정제한과 감리업무 수행보고 및 이의신 청, <u>공사 감리비 예치 등</u> (다만, 区지역내 30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 정, 교체 및 지정제한은 제외한다) | 「주택법」 <u>제43조, 제44조</u> | |
| | 4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및 변경인가(다만, 토지소유자·조합 및 구·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인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지장물의이전 및 제거허가(다만, 토지소유자·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라.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하는 토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제55조 같은 법 제76조의2제2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78조 | 구청장 |
| | | 구획정리사업의 감사 등 |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교통정책과 | 1 |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나. 가산금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 | |
| | | 다. 부담금 대장 기록・관리 | 행령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 행령 제28조·제29조제1항 | |
| | 2 |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자동 차에 대한 인력·영상(다만, 구에서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에 한한다)에 의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신설 2018.10.30.> | 「도로교통법」제143조·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신설 2018.10.30.> | |
| 버스운영과, 택시물류과 | 1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 나.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라.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마.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 바. 개선명령 사.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아. 과징금 부과・징수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 |
| | 2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의 수 리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 행규칙」제21조 | |
| | 3 | 운송사업개시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 행규칙」제40조 | |
| | 4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자 등에 대한 보 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79조 | |
| | 5 | 삭제 <2009.6.10.> | | |
| | 6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및 사후관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7 | 택시(일반·개인)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 |
| | 8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가. 사업등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
| | | 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다. 등록 등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85조 | |
| | | 라. 자가용자동차 행정처분 | 같은 법 제83조 | |
| | | 마.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다만, 사업면허소는 제외한다) | 같은 법 제85조 | |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86조 | |
| | | 사.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8조 | |
| | | 아.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 택시물류과 | 1 |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신청 | 「자동차관리법」제7조제4항 | |
| | | ^ 트 |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2항 | |
| | | 다. 압류등록 | 같은 법 제14조 | |
| | | 라. 등록증의 재교부 | 같은 법 제18조제2항 | |
| | | 마.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된 경우의 조치 |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항 | 군수 |
| | | 바. 등록원부 및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 같은 법 제7조제3항 | 군수 |
| | | 조치 | | |
| | | 사. 신규등록 및 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8조 | 군수 |
| | | 아. 신규등록의 거부 | 같은 법 제9조 | 군수 |
| | | 자.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착허가 | 같은 법 제10조제2항 | 군수 |
| | | 차. 변경등록 | 같은 법 제11조 | 군수 |
| | | 카. 이전등록 | 같은 법 제12조 | 군수 |
| | | 타. 말소등록의 처리와 등록증·등록번호판· 보이이 스나, 여기 미 페기 | 같은 법 제13조 | 군수 |
| | |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파. 수출이행여부의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13조제8항 | 군수 |
| | | | | -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 하.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거. 등록번호의 부여 너. 임시운행의 허가 더.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의 교부 및 반납 러.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3조제9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28조 | 군수 군수 군수 군수 |
| | | | 같은 법 제69조 | 군수 군수 |
| | 2 | 제도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설변경의 허가 및 신고 나. 공사 준공검사 다. 제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라. 제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마. 휴지 또는 폐지 바. 정지명령 및 허가취소 사. 과징금 처분 및 청문 아. 안전검사 자. 안전검사 자.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차. 안전관리 카. 시설개선 명령 타. 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파. 보고·검사 하. 과태료 부과ㆍ징수 | [게도운송법] 제4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4조 | |
| | 3 |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자동차에 대한 인력·영상(다만, 구에서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에 한한다)에 의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4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시설의 확인 나. 사업정지 처분 등 다. 과징금 부과·징수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 운수시업법」제7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 조금의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 | |
| | 6 |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게 지급 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 제44조의2 | |
| 건설산업과 | 1 |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운행 단속 | 「건설기계관리법」제4조· 제6조·제40조 | |
| | | 나. 강제처리 등 다. 소유자에 대한 조사 등 라.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3조·제34조의2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제44조 | |
| | 2 |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u>국</u> <u>토교통부장관</u> 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 하다) | | |
| | |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다. 원상회복의 명령 및 대집행 라.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마. 삭제 | 「도로법」 <u>제61조</u> 같은 법 <u>제65조</u> 같은 법 <u>제73조</u> 같은 법 <u>제83조</u> | |
| | | 바.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아.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의 접수 | 같은 법 <u>제96조</u> 같은 법 <u>제97조</u> 같은 법 <u>제106조</u> | |
| | 3 | 시유 행정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 권리보전, 공유재산대장 작성 관리 및 실태조사 라. 행정재산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3조 | |
| 도로 과 | 1 | 도로공사시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가. 폭20미터미만 도로공사의 시행나. 도로의 유지관리다. 도로의 사용 또는 폐지라.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다. 타공작물 관한 공사의 시행바.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사. 부대공사의 시행 | 「도로법」제23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 |

|) 기보기 | 일려 | ما ما با ت | 1 11 1 | w –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아.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장. 비관리청의 공사시행(다만, 시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차. 도로대장 관리 카.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타.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위험의 예방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9조 | |
| 안전정책관 <개정 2016.12.30.> | 1 |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정지명령 나.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50조 제2항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2호 같은 법 <u>제82조</u> | |
| 하천과 <개정 2016.12.30.> | 1 |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가. 권리・의무의 승계 등 나. 하천관리 상황의 점검 등 다.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라.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마. 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 바.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사. 하천시설물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 의공사나 유지보수 아.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자. 하천공사의 착수신고 및 준공인가 차.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카. 하천여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파.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하. 공익을 위한 처분 등 거. 하천관리원의 임명 및 필요조치를 명하는 권한 행사조치 너.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 및 출입 등 | 「하천법」제5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 항까지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0조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 더.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러. <u>하천 안</u> 에서의 금지지역의 지정 및 공고 |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 | | 머. 하천의 사용금지 등 버.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서. 하천구역에 편입·지정된 토지의 조사, 공고 및 협의 |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
| | | 어. 폐천부지 등의 고시 저. 청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같은 법 제91조 | |
| | 2 | 국가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다음의 권한가.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 <u>같은 법 제46조제6호</u> <u>같은 법 제69조제1항</u> | |
| | | 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 <u>같은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u> | |
| | 3 |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상청구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 | |
| | | 71. 1. 0 0 1 | 한 특별조치법」제2조, 「하 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 | |
| | | 나. 보상대상자의 결정 다. 보상금액의 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 | 라. 보상금 지급의 통지마. 등기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9조 | |
| | | 바.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공고 및 통지 |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 | | 사.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아. 공익사업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토지의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 | | 통지 자. 보상금의 공탁 차. 보상계획의 수립 |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46 (제271회-제2차부록)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4 | 시유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 |
| | | 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 권리보전, 공유재산대장 작성 관리 및 실태조사 라. 행정재산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3조 | |

[별표 3]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보조・보좌기관에 권한위임하는 사항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정책기획관 <개정 2016.12.30.> | 1 | 부·과의 정원 배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4조 |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 농산유통과 | 1 | 도매시장내의 민자유치시설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 시설물 건립 및 기부채납 나. 기부채납재산 무상사용허가・취소・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제20조·제25조,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 농수산물도 매시장관리 시무소장 |
| 인사혁신과 | 1 | 삭제 <2016.4.11.> | | |
| <개정 2018.10.30.> | 2 | 삭제 <2016.4.11.> | | |
| | 3 | 삭제 <2016.4.11.> | | |
| | 4 | 삭제 <2016.4.11.> | | |
| | 5 | 삭제 <2016.4.11.> | | |
| | 6 | 소속공무원의 연가계획 및 허가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 무 조례」제19조 | 작 관광 사업소장 |
| | 7 8 | 5급이하 일반직, 5급상당이하 별정직· 전문경력관·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원·본부·소내 전보 나. 휴직·직위해제·복직 다. 정기승급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 「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65조·제65조의2·제65조의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6조 「공무원연금법」제26조·제 41조·제41조의2 | 작수가 된장 사업소장 사업소장 소방본부장, 문화能화관장 |
| | | |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 체육시설관리 시무소장성수 도시업본부장, 건설관리본부 장,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체육진흥과 | 1 | 체육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 리·운영 조례」제13조 | 체육시설 관리사무 소장 |
| 자원순환과 | 1 |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징수 | 「폐기물관리법」 <u>제6조</u> | 환경자원 사업소장 |
| 공원녹지과 | 1 | 자연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공 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제외 한다) 가. 공원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나. 사용・점용 등 행위허가 다. 원상회복 조치 라. <u>삭제</u> 마.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바. 출입금지, 영업 등의 제한 사.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대 집행 아. 공원대장 작성, 관리 자.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징수 차. 비공원관리청의 사용료징수 허가 카.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허가 및 상속승계 신고의 수리 타.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5조 | 팔공산자 연공원관 리사무소 장 |
| | 2 | 공원구역안에서의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 사방사업의 시행 나. 공무원의 조사 등 다. 사방시설의 관리 라. 공부의 비치 | 「사방사업법」제5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팔공산자 연공원・ 도시공원 관리사무 소장 <개정 2018. 10.30.>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택시물류과 | 1 |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권한 | | 차량등록 |
| | | 가.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된 | 「자동차관리법」제7조제1 | 사업소장 |
| | | 경우의 조치 | 항·제2항 | |
| | | 나. 등록원부 및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 같은 법 제7조제3항 | |
| | |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 | |
| | | 위한 조치 | | |
| | | 다.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 교부 및 | 같은 법 제7조제4항 | |
| | | 열람신청 | | |
| | | 라. 신규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 같은 법 제8조 | |
| | | 마. 신규등록의 거부 | 같은 법 제9조 | |
| | | 바.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 허가 | 같은 법 제10조제2항 | |
| | | 사. 변경등록 | 같은 법 제11조 | |
| | | 아. 이전등록 | 같은 법 제12조 | |
| | | 자. 말소등록의 처리와 등록증·등록번호 | 같은 법 제13조 | |
| | | 판・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 | |
| | | 차.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 같은 법 제13조제8항 | |
| | | 카.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 같은 법 제13조제9항 | |
| | | 타. 등록번호의 부여 | 같은 법 제16조 | |
| | | 파. 임시운행의 허가 | 같은 법 제27조제1항 | |
| | | 하.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 |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항 | |
| | | 판의 교부 및 반납 | | |
| | | 거.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 같은 법 제28조 | |
| | | 너. 등록과 관련한 전산정보 처리 | 같은 법 제69조 | |
| | | 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4조 | |
| | | 러. 저당권의 설정등록·공동저당·변경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
| | | 등록・이전등록・말소등록 |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 | |
| | | 머.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신설 2017.3.2.>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신설 2017.3.2.> | |
| | | 버. 범칙금 통고처분 <신설 2017.3.2.> | 같은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신설 2017.3.2.>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건설산업과 | 1 |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차량등록 |
| | | 가. 신규·변경·말소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 사업소장 |
| | | | 제3조·제5조·제6조, 같은 법 | |
| | | | 시행령 제5조·제6조 | |
| | | 나. 등록원부 비치·관리 | 같은 법 제7조 | |
| | | 다. 등록번호표 부착·봉인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8조·제9조부터 | |
| | | | 제11조까지 | |
| | | 라. 검사증 발급,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 | 같은 법 <u>제13조</u> | |
| | | 사 명령, 정비 명령, 검사기간 연장 | | |
| | | 및 등록번호표 영치 | | |
| | | <u>마.</u> 등록증·검사증 <u>재발급 및 검사증 반</u> | 같은 법 <u>제3조</u> · 제15조, 같은법 | |
| | | 납 처리 | 시행규칙 <u>제5조</u> · 제35조 | |
| | | <u>바.</u> 위임사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4조 | |
| | | 사.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
| | | |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

[별표 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경제정책관, 산단진흥과 <개정 2018.10.30.> | 1 |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수성의료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한함) 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 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의 위임·위탁 다.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인가라. 양도 및 담보제공을 위한 관리공단 재산의 승인마. 설립인가 취소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위임·위탁받은 관리기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사. 입주계약 체결아. 산업단지안의 임대사업 입주계약 체결자.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양도, 양수 및 처분신고 수리차. 입주계약의 해지카.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타.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계획의 수립, 계획 승인, 사업추진과. 공장입지, 공장건축 및 공장등록 등에관한 지도 및 감독하.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자료(정보)입력, 관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6항 같은 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제4항 같은 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5조의2 같은 법 제4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
| | 2 |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무(수성의료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한함) 가. 기초조사의 실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 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 획(변경계획 포함) 수리 |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7조의2 | |
| | | 라.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 같은 법 제12조 | |
| | | 마.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바.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의2,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
| | | 사. 준공검사 실시 및 인가 등 아.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합의 |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 |
| | | | 시행령 제39조 | |
| | | 자. 보고 및 검사 등 차. 인가·승인·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 청문, 고시 |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 |
| 투자유치과 | 1 |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 행령」제26조 | |
| 물에너지 산업과 <개정 2018.10.30.> | 1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정명령 | | |
| | 2 |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일반 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가.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 등록·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페업의 신고 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제14조 |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명령,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대집행사.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아. 청문자. 과태료 부과·징수(유사석유제품임을일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9조 | |
| | 3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은 제외한다)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다. 과징금 부과·징수 라.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9조 | |
| 체육진흥과 | 1 |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 승인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다. 등록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수리 라.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변경 등록 마.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승인취소통보 바. 시정명령 사.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아. 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영업정지 자. 청문 실시 차. 과태료 부과・징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2조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보건건강과 | 1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권한 가.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나. 의료보수의 신고 | 「의료법」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제23조 같은 법 제45조 | |
| | 2 |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변경)·지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
| | |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 | 같은 법 제6조제2항, 「마약 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10조·제11조·제12조 | |
| | | 다. 허가증,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 |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u>삭제</u> | 같은 법 제8조제3항 | |
| | |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 |
| | |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차. <u>삭제</u> 카. 삭제 |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항 | |
| | |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신고 파. 허가 등의 제한 |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 |
| | | 하. 출입·검사와 수거 거. 폐기 명령 등 너. 업무보고 등 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 |
| | | |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 러. 청문 머. 과징금처분 |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 |
| | 3 | <u>삭제</u> | | |
| 환경정책과 | 1 | 삭제 <2018.10.30.> | | |
| | 2 | 삭제 <2018.10.30.> | | |
| | 3 | 삭제 <2014.6.30.> | | |
| | 4 | 삭제 <2018.10.30.> | 5. | |
| | 5 | <u>실내공기질관리</u> 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가. <u>삭제</u> 나. 보고 및 검사 등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3조 | |
| | |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6조 | |
| | 6 | 삭제 <20181.10.30.> | | |
| | 7 | 삭제 <20181.10.30.> | | |
| 기후대기과 <신설 2018.10.30.> | 1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 17조 | |
| | 2 |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관한 권한 가. 황 함유기준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다. 이행완료보고서 접수 라.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승인 마.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변료사용승인서 발급 사.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아.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 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3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라. 조치기간 연장 승인마. 보고와 검사 등바. 청문사.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4조제7항· 제45조제5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부 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4조 | |
| | 4 |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제127조 | |
| | 5 |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등, 허가의 의제 처리 나.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4조 같은 법 제30조 | |
| | | 다. 측정기기의 부착, 운영·관리기준 준수 및 미준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명령 등 라. 조치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 측정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 용 부담 등 |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4항·제5항 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8항 | |
| | | 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바. 조업정지 등의 조치명령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 |
| | | 아. 허가의 취소 등 자. 과징금 처분 차.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카. 보고와 검사 등 타. 청문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4조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수질개선과 <개정 2018.10.30.> | 1 |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 |
| | 2 | 삭제 <2016.4.11.> | | |
| | 3 | 낙동강수계물관리에 관한 권한 가.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 지정 등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12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 |
| | | 나.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징수 등 다. 과징금 처분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3조, 「낙동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6조 | |
| 도시계획 정책관 <개정 2018.10.30.> | 1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제6조의 경제자유 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안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에 한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 경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 |
| | | 나. 실시계획의 인가 다. 실시계획 서류의 열람 등 라. 실시계획의 고시 마.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등 |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 |
| | 2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경제 자유구역안에서의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 축·운영 및 활용에 한함) | | |
| | 3 | 삭제 <2009.6.10.> | | |
| | 4 | 삭제 <2009.6.10.> |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도시계획 | 1 |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정책관, | | 가. 사업계획의 승인 | 「주택법」 <u>제15조</u> | |
| 건축주택과 | |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 | |
| <개정 2018.10.30.> | | 등 협의 | | |
| | |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같은 법 <u>제25조</u> | |
| | | 라. 주택의 감리 등 | 같은 법 제43조 | |
| | | 마.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47조 | |
| | | 바.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 같은 법 제30조 | |
| | |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한테 이 옷 함께 | EL HANDLE | |
| | 2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 |
| | | | 특례법」제5조 | |
| | | | | |
| | 3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 | |
| | | 한 법률」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 | |
| | | 따른 개발사업지구안 및 같은 법 제18조에 | | |
| | |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 | |
| | | 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도시개발법」제4조 | |
| | | 나. 기초조사 등 | 같은 법 제6조 | |
| | | 다. 사업의 신탁 승인 | 같은 법 제12조제4항 | |
| | | 라. 조합설립의 인가(변경인가) 신고 | 같은 법 제13조 | |
| | | 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승인 | 같은 법 제23조 | |
| | | 바. 선수금 수금의 승인 사. 환지예정지 지정·통지 |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35조 | |
| | | 아. 준공검사 실시 | 같은 법 제50조 | |
| | | 자. 공사 완료의 공고 | 같은 법 제51조 | |
| | | 차.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 같은 법 제52조 | |
| | | 의제되는 사항 협의 | EL HANDAL | |
| | | 카.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 같은 법 제53조 | |
| | | 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협의 | 같은 법 제56조 | |
| | | 파.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 같은 법 제58조 | |
| | | 설치 비용 부담 | LE H WALL | |
| | | 하.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같은 법 제68조 | |
| | | 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같은 법 제71조 | |
| | | 너.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 같은 법 제85조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 4 | 택지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한함)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나. 토지에의 출입 등다. 토지수용라. 환매권마.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바. 서류의 열람 및 송달사. 자료제공의 요청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자.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2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 |
| 토지정보과 | 2 |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지번변경의 승인 | 「공인중개사법」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29 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6조제2항 가용 법 제80조 제1항 | |
| | | 나. 지적공부의 반출 승인 다. 지적공부의 복구 라. <u>삭제</u> 마.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바. 축척변경의 승인 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아.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자.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83조제3항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 소관부서 | 일런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
| 건설산업과 | 1 | 도로점용에 관한 권한 가. 지방도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 나. 도로점용료의 징수 다. 도로점용자의 원상회복 면제 승인 라. 도로부지 점용양도 신고 | 「도로법」 <u>제65조</u> 같은 법 <u>제66조</u> 같은 법 <u>제73조</u> 같은 법 <u>제106조</u> | |
| 도로과 | 1 |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지방도에 한함)(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의한 도로에 한함) 가. 도로공사계획 수립 및 공고나.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라.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3 「도로법」제31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도로법」제57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 |

관계 법령

하 천 과

[하 천 법]

- 제46조(<u>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u>)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5.(생략)
 - 6. <u>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 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 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 5. (생략)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택시물류과

[궤도운송법]

-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3. 3. 2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 ④ <u>궤도사업자는</u>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u>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u>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8조(준공검사) ① <u>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u>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u> <u>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u>
 - 1.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3. 법인인 궤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 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신고</u> 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략)
-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6. 3. 22.>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4조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5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위반한 경우(궤도사업자만 해당한다)
- 6.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법인은 제외한다.
- 7.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8.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
- 9.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 궤도를 운영한 경우
-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11.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 1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13. 제23조제 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일으킨 경우
- 15.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16.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제13조(과징금)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은</u>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 제1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은</u>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 · 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2. 임시검사: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은</u>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② <u>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u>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u>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략)

- 제23조(시설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특별시장·</u> <u>광역시장은</u>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u>궤도사업자</u>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제25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지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작약시장은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궤도운송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 제30조(보고·검사) ① 시<u>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u>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u>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2.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 3.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7.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건설산업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① ~ ③ 생략

④ <u>건설기계의 소유자는</u>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u>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등) ① ~ ③ 생략

- ④ <u>시·도지사는</u>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u>건설기계</u> 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u>시·도지사는</u>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u>정기검사를 받을</u>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⑥ <u>시·도지사는</u>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⑦ <u>시·도지사는</u>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⑧ <u>시·도지사는</u>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⑨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4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8. 9. 18.>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u> 부과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2014. 1. 28, 2015. 8. 11, 2018. 9. 18>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 2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 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 4.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 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6.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u> <u>부과한다.</u> <개정 2011. 9. 16, 2015. 8 11., 2016. 1. 19., 2017. 1. 17., 2017. 3. 21.>
-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한 자
-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 6.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9의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령에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u>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u>: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3조(공동저당 등록) ①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특정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특정동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각 건설기계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①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 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①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략)
-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 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토교통부장관
 - 나.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u> <u>·</u>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 6. ~ 9. (생략)
-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④ <u>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u>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u>소유자나 점유자에게</u>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 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u>공작물·물건</u>,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도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u>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u>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73조(원상회복) ① <u>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u>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u>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u>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 상회복할 수 있다.
-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① <u>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u> 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입목·죽·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劳务)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u>도로관리청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6조・제40조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 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52조·제61조·제77조 또는 제107조 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u>도로관리청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u>제96조에 따른 처분</u>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 99조를 준용한다.
-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시람이 시망한 경우: 상속인

-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 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 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 1. ~ 12. (생략)
 - 13. 법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u>접도구역의 지정·고시 및 시설 등의</u>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건축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절차,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16.>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裁决申请)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8. 28.>
 -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
 -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표시한 도면
 - 4.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 8. 11., 2018. 7. 16.>
 - 1.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 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 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1조제2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④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 ⑤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또는 임차인 과반수(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 2. 12.>

[주택법]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이상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u>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 2. <u>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u> <u>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또는 시장·군수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공구별 공사계획서
- 2. 입주자모집계획서
- 3. 사용검사계획서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 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1. ~ 25. (생략)

-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决)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u>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还买)하거나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3.>
 -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감리자를 교체하고, 그</u>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 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 인지 여부의 확인
 -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u>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u>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u>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및 제48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 ③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u>시공자 및 사업주체는</u>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 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u>사업주체는</u> 제43조제3항의 계약에 따른 <u>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3.>
-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u>사업계획승인권자는</u>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u>그 감</u>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산단진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생략)

-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권자
 -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 단지관리공단
 -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② <u>관리권자는</u>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u>관리기관에 관리</u>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농산유통과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략)

[동물의약품 등 취급 규칙]

- 제20조(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① 법 제44조 제2항 및 법 제45조에 따라 <u>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u>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허가사항등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 법 제31조제9항, 법 제42조, 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85조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제6항,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업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제조・수입품목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있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이 제7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의 심사결과, 법 제32조 및「의료기기법」 제8조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법 제33조 및「의료기기법」 제9조에 따른 재평가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정보관리결과에 따라 법제76조제1항 및「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일정 기한까지 변경하도록 한 품목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이 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품목으로 본다. <개정 2013, 1, 4, 2013, 3, 24, 2015, 10, 5>1. ~ 3, (생략)
 - 4. <u>동물용의약품도매상</u>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 및 임대업의 변경: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신고)서에 제2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 본부장, 수산과학원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제25조(허가증등의 재교부등) ①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라 한다)가 그 허가증・등록증・신고증 또는 품목허가증・품목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7., 2006. 8. 16., 2011. 6. 15., 2011. 9. 20., 2013. 1. 4., 2013. 3. 24.>

제26조의5(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 법 제40조(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기법」 제14조(같은 법 제15조제6항·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물약국을 개설한 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u>폐업·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u>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동물약국 개설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허가증·신고 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수산과학원장 또는 <u>시장·군수·구청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① ~ ⑥ (생략)

제49조(허가증 등의 반납) ①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u>동물용의약품</u> 등의 취급자가 법 제76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36조에 따라 <u>허가취소처분·등</u> 록취소처분 또는 제조소의 폐쇄처분이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역본부장, 수산과학원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을</u>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7., 2006. 8. 16., 2008. 5. 19., 2011. 6. 15., 2013. 1. 4., 2013. 3. 24.>

일자리노동정책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u>시·군·구</u>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조합원수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 ② (생략)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대표자의 성명
 -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제28조(해산사유)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 ~ ② (생략)

③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④ (생략)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제9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8. 2. 20.>

 $(4) \sim (6)$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2012. 6. 5. 폐지

물에너지산업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7.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9.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10.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② <u>시·도지사는</u>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 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 그 기준을 말하며,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8.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 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③ <u>시·도지사는</u>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 ·영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경우
- 8.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④ <u>시·도지사는</u>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

- ·영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조 단서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 하거나 제거한 경우
- 4. 제30조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⑤ 시·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 6.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⑥ 시·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 ⑦ (생략)
- ⑧ <u>시·도지사는</u>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 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 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2.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 · 환불 또는 수리
- 3. 그 밖에 시 · 도지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설비·검사설비, 제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업자 ·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여업자
 - 4.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5.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6.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② ~ ③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과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액화석유 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u>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명할 수 있다.
-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 ② <u>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u>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u>시·도지사에게</u>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자체수리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2.>
-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조업자등 중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3.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4.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5.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①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및 <u>시·도지시는 그가</u> 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정증인(检定证印)을 표시하고, 계량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계량기는 봉인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30조(정기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u>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u>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수시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u>시·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u>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① 시·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시업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사증인(检查证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는 제41</u> 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및 개선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적합성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u>1. 시 · 도지사</u>
 - 2. 형식승인기관의 장
 - 3. 검정기관의 장
 - 4. 자체검정사업자
 -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 6.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 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u>시·도지사는</u>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 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 2.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

- 량기의 훼손 · 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질문
- 3.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 ② ~ ⑤ (생략)
- 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① <u>시·도지사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가 계량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u>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를 제거하고 산업</u> 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 또는 수리한 계량기
 - 2.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한 계량기
 - 3. 제36조 각 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량기
 - 4. 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계량기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검사증인의 표시 제거 및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청문) ① (생략)

- ② <u>시·도지사는</u> 제13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u>등록·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u>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1. (생략)
-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5. 28.>

- 1.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 2. 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3. ~ 6. (생략)
- 7. 법 제3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그 면제
- 8. ~ 10의2. (생략)

10의3.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인(松香证印)의 표시 및 제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12조(계량기사업자 대장) 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보건건강과

[결핵예방법]

-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 (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u>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u>특</u>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지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지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기받은사항을 변경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2 3〉
 -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 5. 대마재배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 ② ~ ④ (생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허가의 신청) ① ~ ② (생략)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과 동시에 당해 신청서에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명기한 경우에는 마약류도매업자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③ (생략)
-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 (생략)

-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u>의료기관은</u>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의료장비(이하 "특수의 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u>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2010. 1. 29., 2010. 9. 1., 2015. 7. 24., 2016. 10. 6., 2016. 12. 29., 2017. 6. 21.>

-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사본
-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5. 「전기시업법 시행규칙」 제路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 6.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약사법]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 ①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려는 품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략)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 ① 법제和조제항본문에 따라 약국제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이하 "조제실제제"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실 제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업무를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u>운영기준에 미달한</u>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u>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시장·군수·</u> <u>구청장은</u>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u>청문을 하여야 한다.</u>
-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양도·양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27조(수련시설의 휴지·폐지) ① <u>수런시설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u> (休止), 재개(再开), 폐지(闭止)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과

[소음진동관리법]

-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가 실시</u>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 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u>시·도지</u> 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u> 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공원녹지과

[자연공원법]

제25조(공원보호구역) (삭제) 2008. 12.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산림기술자자격증 발급 등) ① (삭제) 2018. 11. 29.
제35조(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삭제) 2018. 11. 29.

도시계획정책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학교사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大修舊)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u>개발</u> 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3. 5. 28>

- ②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 도시계획이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 ③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작성되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8. 4. 17.>
-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개발계획의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개발시업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가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09. 2. 6.>
- 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군구 및 인접 사·군구에 훼손자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자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자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 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에 관한 시행방법,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 1.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 2. 제1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 3. 지방자치단체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高附来)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 가액(감정평기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을 말한다) 의 70분의 30(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 ④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끝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 ⑥ 시·도지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시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시업 요건을 검토한 결과 및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 ⑧ 정비사업의 내용·방법, 제1항에 따른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요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사·군관리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8>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요구대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8.>

-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 ⑤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 제6조(기초조사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인구·경제·사회·문화·교통·환경·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5. 28.>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제목개정 2013. 5. 2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개정 2017.4.10.>

권한위임 사무(제102조제1항 관련)

| 현 행 | |
|-----------------------------------|-----------|
| 위 임 사 무 명 | 근거법규 |
|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국토의 계획 |
| 가. 다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입안의 제안서 처리, | 및 이용에 관한 |
|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법률」 제24조 |
| (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부터 제28조까 |
|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지 및 조례 제8 |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입안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 | 조부터 제10조 |
| 획시설이 폐지되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 용도 | 까지 |
| 지구를 주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동일하게 | |
| 변경하거나 종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하 | |
| 는 경우 및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집단 | |
| 취락ㆍ경계선 관통취락ㆍ단절토지에 대한 용도 | |
| 지역·용도지구변경에 한한다) | |
| (사)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 소규 | |
| 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 |
| (2) 도시기반시설 | |
| (파) 학교(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제외한다) | |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법]

-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 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 대로 부여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지<u>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u>복구하여야 한다.
-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u>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u>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u>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u>
 -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3.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 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7.>
-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 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 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u>시·도지사 또는 지적</u> 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제2항 각 호의 사항
-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지적 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6. 19., 2015. 6. 4.>

-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 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 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 2.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 3. 지적소관청은 지형·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에게 통보할 것

안전정책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5조(보고 및 검사) ② <u>시·도지사는</u>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u>해당 사항에 관한</u>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1. 제조·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0.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8.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경제정책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 제7조(자금신청) ① 제5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시장과 위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평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6조(업무위탁) ① <u>시장은</u>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 보증기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및 구·군 등(이하 "금융기관등" 이라 한다)에 자금관리 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민생경제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검사 등) ① <u>시·도지사등은</u> 대부업자등에게 <u>그 업무 및 업무와</u>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② <u>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u>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 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 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 ⑥ (생략)
 - ① <u>시·도지사등은</u>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u>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u> <u>할 수 있다.</u> <개정 2015. 7. 24.>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 ④ (생략)
- ⑤ <u>시·도지사등은</u>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u>영업정지</u>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u>다른 시·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u> <개정 2012. 12. 11., 2015. 7. 24.>
- 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u>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u>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u>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록수수료 등) ① <u>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u>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u>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u>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기계로봇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공장·사업장·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 설비·검사설비, 제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과태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过误内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제29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경우 제24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4. 8. 6.>
 -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15. 2. 16.>

출산보육과

[사회복지사업법]

-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시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 ⑥ <u>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u>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 ⑧ (생략)

기후대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 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 ⑧ (생략)
-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u>측정기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운영</u> 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u>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부단한다.</u>
- ① (생략)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 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9. 4. 16.>
 -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u>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u> · 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5., 2009. 6. 30., 2010. 5. 18., 2013. 12. 11., 2017. 10. 17.>

- 1. ~ 10.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5.>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 ③ (생략)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수질개선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u>시·도지사는</u>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u>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u>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시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지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지를 고용한 지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 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 4 28.,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过率別) 부과계수(赋课系数),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 ⑤ 제4항에 따른 기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岁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6. 1. 27.>
-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신금을 내야 하는 지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2.>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 7, 28.>
-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 1.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 ⑤ 생략

- 제1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부과 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 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시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⑧ 생략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하천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익